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서식] <개정 2022. 11. 25.>

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신고시기	A: 본신고 [] B: 사전신고 []	접수번호		접수일자	년 월 일
신고제품구분	1: 식품 등 [] 2: 식품첨가물 [] 3: 기구 또는 용기·포장 [] 4: 축산물 []	처리기간	식품등: 서류검사 2일, 정밀검사 10일 (진균수시험대상 10일,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,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) 축산물: 서류검사 3일, 정밀검사 18일		

수하인 (수입화주)	성명		개인통관고유부호
	연락처		
신고인 (구매대행 영업자)	성명	상호	영업등록번호
	주소		연락처
	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		
송하인	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		

입항일	년 월 일	선명(기명)	
검사(반입) 장소		(☎ - -)	
반입일	년 월 일	선하증권(B/L)번호	
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항번호	제품명		제조회사명		제조국가		총수량	(단위: EA)	제품 URL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유의사항

가.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나. 동물용의약품,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